###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-20호

#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개방형직위 농업박물관장 공개모집 공고

전라남도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농업박물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> 2024년 4월 11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 1 임용예정 직위(직급) 및 인원

임용직위	임용직급	선발인원	근무기간	근무처
농업박물관장	지방서기관·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일반임기제(개방형 4호)	1명	2년	전라남도 농업박물관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.

# 2 주요 직무내용

- 농업박물관 운영 종합 기획,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 및 운영
- 전통 농경문화 및 민속 관계 학술 조사 연구 등

## 3 근거법령

- ○「지방공무원법」제29조의 4(개방형직위)
-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-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
## 4 임용신분

-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, 임용기간 동안「지방공무원법」및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
-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 제외)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- 5 응시자격 요건(적용 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### 가. 공통요건(필수요건)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

### ○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○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#### 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- 1. 공공기관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-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-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-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-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-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-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### ○ 주소지·성별, 연령 : 제한 없음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)

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
## 나. 자격요건 :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

구 분		자 격 요 건			
경력 요 건	학력기준	〈석사학위 이하인 자〉 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			
		〈박사학위 소지자〉 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			
	자격증 기준	·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'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'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			
		※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 (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 및 별표5의2)을 의미함			
	공무원 경력기준	·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			
		<ul><li>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</ul>			
	민간 경력기준	<ul> <li>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li> </ul>			
		※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,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			
<b>É</b>	<ul> <li>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국내·외 기관으로부터</li> <li>실적요건</li> <li>경력 또는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</li> <li>※ 객관적인 자료 증빙</li> </ul>				

※ **관련분야:** 관광, 문화, 경영, 농업, 박물관 운영

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,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
## 6 보수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,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
  - (하한액) 66,122천원, (상한액) 없음
-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및「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름
  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(개방형직위 보전수당 등)
  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    -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 7 시험방법 및 일정·장소

### 가. 시험방법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: 형식요건 심사
  - 임용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
 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**7배수 이상**으로 서류전형 **합격자를 결정**할 수 있음
- 2차 시험(서류심사+면접시험) : 적격성 심사
  - 1차 시험(형식요건 심사)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\*에 대한 적격성 심사
    - \*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능력, 조직관리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

### 나. 시험일정 및 장소

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 발표	면접시험	최종 합격자 발표
4. 22.(월) ~ 4. 26.(금)	5. 7.(화)	5. 16.(목) ~ 5. 17.(금) * 기간 중 1일(별도통보)	5월 중 ※ 개별통보
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전라남도 시험정보(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/)에 공고
- ※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'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'에서 확인
-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공고 및 개별 통보

## 8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'24. 4. 22.(월) ~ 4. 26.(금) / 5일간

○ 접 수 처 : 전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8층)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 우편 접수는 **접수마감일 소인분**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- 봉투 겉표지에 "개방형직위(농업박물관장) 응시원서 재중" 기재

※ 주 소 : \$\P\$58564)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

-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
- 우편 접수 시, 응시수수료(우편통상환증서)는 제출서류와 동봉

## 9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②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(본인의견서) (별지 제2호 서식) 1부
- ③ 응시원서(별지 제3호 서식) **1부** 
  - 반명함판(3×4cm) 사진 1매 별도 제출
  - 응시수수료: 10,000원
    - ※ 응시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(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),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(우체국에서 판매)으로 대체(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)
- ④ 이력서(별지 제4호 서식) **1부** 
  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- ⑤ 자기소개서(별지 제5호 서식) **1부**
- ⑥ <mark>직무수행계획서</mark>(별지 제6호 서식) **1부**
- ⑦ 최종 학력증명서 1부(박사·석사·학사)
  - 박사 학위의 경우, 석·학사 학위 학력증명서도 함께 제출
  - 석사 학위의 경우,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도 함께 제출
- ⑧ 경력(재직)증명서 1부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)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
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
  -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"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제7호 서식)" 추가 제출
-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(週)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(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)
-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,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업자 등록증, 등기부등본 또는 '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,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

### ⑨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

▶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"보험가입 전체기간"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

####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필수)
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#### 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
- 폐업증명서로 증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(근로 약정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해야 함

### ⑦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 발행)

- ① 자격(면허)증·어학능력시험 증명서, 수상실적 등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① 학위·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 증빙서류(별지 제8호 서식) **1부(해당자에 한함)**
-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9호 서식) 1부
- (4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(별지 제10호 서식) 1부

### 《응시자 유의사항》

-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
-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③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토록 하며, 6개월 이전의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)내의 서류여야 함
-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⑤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10 기타사항

- 응시자가 없을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을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,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 공고(7일) 합니다.
- 2차 시험(면접시험)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추가 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43조의3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- **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** 다만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전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1)
  - ▶ 직무내용 관련 문의 : 농업박물관 관리팀(☎ 061-462-2741)